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김희규** · 신승표***

<요 약>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쉽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상을 지지하는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현상은 필요로 하는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모두가 더 큼에 따라 이들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 있다. 만약에 이처럼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는 것은 적절하고 충분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아울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에 관하여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는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의 언급내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들에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전반적으로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이러한 양의 관계를 완화하는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하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이러한 양의 관계를 완화하는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음의 조절효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에는 존재하는 반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이 실제이익조정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감사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님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확대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공헌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발생액 이익조정, 실제이익조정, 지식전이 효과, 세무서비스의 보수

* 이 논문은 주저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인하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인하대학교 박사(경영학), gom1148@gmail.com, 주저자

*** 인하대학교 교수, 경영학과, smshin@inha.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19년 4월 24일

1차수정일 2019년 7월 19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3일

I. 서 론

기업의 경영자는 발생액 이익조정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 실제이익조정도 시도할 수 있으며,¹⁾ 따라서 실제이익조정은 발생액 이익조정에 대한 대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들에 있어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대체관계가 존재함을(다시 말하여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와 실제이익조정의 규모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실증결과는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와 실제이익조정의 규모 사이에 음이 아니라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 선행연구들에서도 기업들이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추론에 입각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전반적인 실증결과는 이들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양의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기업들은 발생액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과 실제이익조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의 총합이 최소화되도록 이들 사이에 최적의 배합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이익조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비중이 더 크게 될 것이고, 발생액 이익조정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큰 기업일수록 실제이익조정의 비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손쉬운 예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점과는 별도로 목표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총체적인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와 실제이익조정의 규모 모두가 더 클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총체적인 이익조정의 규모는 기업마다 서로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필요로 하는 총체적인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와 실제이익조정의 규모 모두가 더 크게 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전반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1) 발생액 이익조정이란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발생액(accruals)을 조정함으로써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제이익조정은 실제 경영활동을 조정함으로써 보고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① 상품과 제품의 매출시기를 조정하거나 ② 채고자산 생산량의 조정을 통하여 매출원가를 조정하거나 ③ 연구개발비나 광고비 및 유지비용 등과 같은 재량적 비용지출의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달성된다.

2) 다만 Zang(2012)에서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기업들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익조정이 의심되는 일부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Zang(2012)에서는 발생액 이익조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대 실제이익조정 변수($Pred_RM$)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아닌 양의 관계가 있음을 지지한다.

하여 횡단면적으로 살펴보면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결국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 역시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보는 것은 적절하고 충분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발생주의 회계를 적절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감사업무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 역시 크게 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인의 입장에서 기업이 실제이익조정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이익조정은 비정상적이거나 왜곡된 경영의사결정을 통하여 달성되는데 경영의사결정 자체는 감사업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려면 기업의 현황과 미래의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에 관하여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업에 대한 지식이 감사업무로 전이됨으로써 감사 품질과 재무보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지지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가 감사인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 그렇다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의 경우는 이용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비하여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클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정도가 완화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클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편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기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 주로 발생하는 반면, 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왜냐하면 높은 보수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기업경영상의 중대한 이슈와 관련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이 경우에 감사인은 다방면에서 중요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반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낮은 경우 감사인은 질적 수준이 낮은 정보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을 감안할 때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클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관계에 대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지니는 음의 조절효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동기 및 논리전개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들에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전반적으로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의 관계에 대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인

으로 말하여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 대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며, 이러한 음의 조절효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에서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크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이러한 관계를 완화하는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음의 조절효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에는 존재하는 반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이 실제이익조정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는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감사품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지님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확대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공헌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서 제Ⅱ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근거논리를 뒷받침하거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몇 가지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제Ⅲ장은 실증연구설계로서 여기에서는 실증분석모형과 변수측정 그리고 연구대상기간과 표본기업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와 해석을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한다.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1. 선행연구

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선택(또는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Graham et al.(2005)과 Roychowdhury(2006) 등에 의하면 기업은 발생액 이익조정 이외에 실제이익조정도 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액 이익조정이나 실제이익조정 중의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둔 실증분석은 기업이 행하는 이익조정 행위의 전체적인 모습을 포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³⁾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선택(또는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몇 개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먼저 국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hen et al.(2008)는 1987년부터 2005년까지의 미국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2002년 SOX (Sarbanes-Oxley Act) 통과 전후로 기업들의 이익조정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3) 이점에 관하여는 일찍이 Fields et al.(2001)에서 자세히 언급된 바 있다.

그 결과 발생액 이익조정은 SOX가 통과될 때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SOX 통과 이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실제이익조정은 SOX 통과 이전에는 감소하였다가 SOX 통과 이후에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익 벤치마크를 간신히 달성한 기업은 SOX 통과 이후에 발생액 이익조정 보다는 실제이익조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hen and Zarowin(2010)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유상증자 연도에 발생액 이익조정 및 실제이익조정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이익조정이 유상증자 이후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업은 유상증자 연도에 발생액 이익조정 뿐만 아니라 실제이익조정까지 사용하며, 발생액 이익조정과 관련된 비용이 높을수록 실제이익조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dertscher(2011)는 가치가 과대평가된 기업의 경영자는 발생액 이익조정 범위 이내에서 추가적인 이익조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이익조정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과대평가가 지속되면 하나의 이익조정 유형에서 다른 유형의 이익조정으로 옮겨 가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대평가된 기간이 길수록 총 이익조정의 규모가 크고 아울러 실제이익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과대평가된 기업에서 발생액 이익조정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경영자가 발생액 이익조정의 대안으로 실제이익조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ohen et al.(2008)와 Cohen and Zarowin(2010) 및 Badertscher(2011)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전략적 선택에 관심을 두었으나 이러한 두 가지 이익조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하여 Zang(2012)에서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에 따라서 이들 사이에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에 근거하여 이익의 상향조정 목표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실제이익조정이 기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발생액을 낮추도록 미세하게 조정(fine-tune)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들에 있어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기업들에 있어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국외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곤란하다. 한편 몇 개의 국내 선행연구들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아닌 양의 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영규(2012)는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이 서로 대체적인지 아니면 보완적인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실제이익조정 측정치는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이 서로 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김성혜 외(2012), 이아영 외(2012), 전홍민 외(2013), 신일항 외(2014) 등에서는 주된 실증분석에 대한 부수적이거나 추가적인 분석의 일환으로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4) 이점에 대하여는 연구가설을 도출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이들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지식전이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그동안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과연 지식전이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비교적 다양한 실증연구가 있었으며, 일부의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외하면 이들은 대체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지식전이 효과를 지닐 것이라는 예상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 선행연구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재무보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와 세무보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재무보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inney et al.(2004)는 감사인에게 지급된 세무서비스 보수가 재무제표 재작성과 음의 연관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재무보고의 품질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Gleason and Mills(2011)은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구매하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국세청과의 분쟁에 대비한 세금충당금을 보다 충분하게 설정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rishnan and Visvanathan(2011)는 감사인에게 지급된 세무서비스 보수가 손실회피 이익조정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Krishnan et al.(2013)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고객기업의 이익의 가치관련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e Simone et al.(2015)는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 기업은 내부통제를 적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분석한 결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내부통제의 중요한 약점을 공시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ook et al.(2008)는 4분기 유효세율을 3분기 유효세율보다 감소시키지 않으면 목표이익에 도달할 수 없었던 기업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수수료가 4분기 유효법인세율의 대폭적인 감소와 관련성을 지님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Christensen et al.(2015)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중위수 이상인 경우에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구매기업으로 분류하고 실증분석한 결과, Cook et al.(2008)과는 상반되게 4분기 유효세율을 낮춤으로써 목표이익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식의 이익조정 행위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억제하는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세무보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재무보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 비하여 적은 편이며, 이들은 주로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와 조세회피 사이의 연관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McGuire et al.(2012)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사인이 산업세무 전문성 또는 종합적인 전문성(산업감사 전문성 & 산업세무 전문성)이 있는 경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조세회피와 양의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김은희와 김임현(2017)은 McGuire et al.(2012)에서의 연구방법론을 바탕으로 하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감사인이 산업감사 전문성과 산업세무 전문성 및 종합적인 전문성을 가진 경우 모두에서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조세회피와 양의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요컨대 McGuire et al.(2012) 및 김은희와 김임현(2017)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있을 경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조세회피 전략의 효율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영한 외(2010)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유지·해고가 유효법인세율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한 결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유지는 유효법인세율과 음의 관련성을 가지지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해고는 유효법인세율과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박미영(2012)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와 조세회피 사이에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김희규와 신승묘(2017)는 기업에 세액공제 기회가 존재할 경우 이를 실제 세액공제로 실현시키는 정도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강화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비경상적 지출항목인 기계장치 투자액과 개발비 투자액이 실제 세액공제로 실현되는 정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가설

Zang(2012)은 경영자는 발생액 이익조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실제이익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균형(trade-off)을 이루도록 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여 이익의 상향조정 목표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의 경우 Unexpected_RM(비기대 실제이익조정 측정치)가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Zang(2012)의 실증결과가 일반적인 기업들에 있어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Zang(2012)의 연구에서는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에 대한 Expected_RM(실제이익조정의 기대 값 측정치)의 회귀계수가 유의한 양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Zang(2012)의 실증결과는 이익의 상향조정 목표를 가진 기업에서 실제이익조정이 기대보다 많이 이루어진 경우 회계연도말에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를 미세조정(fine-tune)한다는 의미로만 한정적으로 해석가능한 것이다.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박영규 2012 ; 김성혜 외 2012 ; 이아영 외 2012 ; 전홍민 외 2013 ; 신일항 외 2014). 이는 기업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을 함께 시도하고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 역시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들 사이에 양의 관계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하건대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는 음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양의 관

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기업들에 있어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횡단면적으로 음의 관계가 아니라 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개연성과 관련하여 Zang(2012)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모두 비용이 수반되므로 기업은 이들의 상대적인 비용에 근거하여 이들 사이의 균형(trade-off)을 유지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어떤 하나의 이익조정에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다른 하나의 이익조정에 보다 많이 의존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적인 비용요인은 별도로 기업마다 목표로 하는 총이익조정 금액이 서로 다름에 따라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한 이익증가 조정의 정도가 다르게 되고 이로 인하여 궁극적으로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AEM과 REM 및 TEM을 각각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및 ‘목표로 하는 총이익조정’이라고 정의할 때, 앞서 제시한 Zang(2012)에서의 언급내용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할 수 있다. 첫째, $AEM = \alpha \times TEM$ 및 $REM = (1 - \alpha) \times TEM$ 이라는 식이 성립한다. 이때 α 가 기업마다 상이함에 따라 만약 기업들 사이에 TEM이 동일하다면 AEM이 클수록 REM이 작게 되고 결과적으로 AEM과 REM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둘째, AEM과 REM은 모두 TEM의 증가함수인데 TEM은 기업마다 서로 다름이 보통일 것이다. 이에 따라 TEM이 큰 기업일수록 AEM과 REM 모두가 더 크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AEM과 REM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실제이익조정은 회계연도 중에 경영의사결정의 일환으로서 실행되어야 하지만 발생액 이익조정은 회계연도 말에 실행할 수 있음에 따라 이들 사이에는 이익조정의 시기(timing)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처럼 이익조정의 시기(timing)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 따라 기업은 실제이익조정의 실행결과에 기초하여 발생액 이익조정의 수준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에 기초할 때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과연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⁵⁾ 또한 후술하는 연구가설 2에서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지에 대한 검증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에 입각하여 다음의 연구가설 1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1 :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크다.

5) 참고로 Zang(2012)에서도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발생액 이익조정을 종속변수로 하고 실제이익조정을 독립변수로 한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창섭 등(2012)에서는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실제이익조정을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반영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감사인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늠해보고 이를 감사업무에 반영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감사인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수준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많은 감사자원을 투입하여 철저히 감사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그 결과는 ‘실제이익조정이 높을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이 높은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다시 말하여 회계감사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게 될 것이다.

실제이익조정은 할인판매나 재고자산의 과잉생산 혹은 연구개발비 및 광고선전비의 과소지출 등과 같이 비정상적이거나 왜곡된 경영의사결정을 통하여 달성되는데 이와 같은 경영의사결정 자체는 감사업무의 대상이 아니다.⁶⁾ 그리하여 실제이익조정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경영진의 이익조정 동기에 따른 결과인지 아니면 사업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의사결정의 결과인지 구분하려면 감사인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요컨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려면 단순한 감사업무 수행 이외에 기업의 현황과 미래의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한편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와 관련하여 수행된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이 회계감사 이외에 세무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습득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이 감사업무 수행에 전이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회계감사 이외에 세무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감사인은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참여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앞서의 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감사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효과’는 감사인이 회계감사 이외에 세무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경우에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과연 그러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가설 2를 설정한다.

연구가설 2 :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양의 관계에 대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음의 조절효과를 지닌다.

6) 기업이 발생액 이익조정을 하였는지는 감사업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반면에 실제이익조정은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사업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사인의 기본적인 업무는 고객기업이 각종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록 경영자가 실제이익조정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였다면 이는 감사상 중요한 이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양의 관계에 대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지니는 음의 조절효과는 당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조세불복이나 세무계획 또는 세무전략 등과 같이 기업경영상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한 세무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자신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할 수 있으며, 이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는 높을 것이다. 이처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 감사인은 보수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기업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할 것이다. 그 결과 감사인은 당해 세무서비스로부터 기업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추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단순한 납세순응관련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은 회계감사의 연장선에서 수월하게 납세순응을 하려는 동기에서 자신의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할 수 있으며, 이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는 낮을 것이다.⁷⁾ 이처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낮은 경우 감사인은 제한적인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고 따라서 당해 세무서비스로부터 추가적인 지식을 그리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를 그다지 지니지 않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크게 되는 양의 관계에 대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음의 조절효과를 지닌다면, 이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에 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된다. 다시 말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 당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를 지닐 것이지만,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보충적 연구가설(연구가설 2-1 및 2-2)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2-1 :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 당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를 지닌다.

연구가설 2-2 :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낮은 경우 당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지 않는다.

7) 이영환과 윤성만(2011)에서는 단순한 납세순응 관련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다른 유형의 세무서비스의 보수보다 상당히 작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의 추론과 부합하는 것이다.

Ⅲ. 실증연구설계

1. 실증분석모형

가. 연구가설 1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크다.”는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AEM_{it} = & \beta_0 + \beta_1 REM_{it} + \beta_2 BIG4_{it} + \beta_3 FOR_{it} + \beta_4 OWNER_{it} + \beta_5 SIZE_{it} \\
 & + \beta_6 LEV_{it} + \beta_7 PTROA_{it} + \beta_8 MTB_{it} + \beta_9 GROW_{it} \\
 & + \beta_{10} MKT_SHARE_{it-1} + \beta_{11} CASHCYCLE_{it-1} \\
 & + \beta_{12} HHI_{it} + \beta_{13} F_ISSUE_{it} + \beta_{14} LAGTA_{it} \\
 &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end{aligned} \tag{1}$$

AEM =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 ;

REM = 실제이익조정 측정치 ;

$BIG4$ = 감사인이 Big4 이면 1, 아니면 0 ;

FOR = 외국인투자자 지분율 ;

$OWNER$ = 최대주주 지분율 ;

$SIZE$ =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

LEV = (부채총액/자산총액) ;

$PTROA$ =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기초 총자산) ;

MTB = (주식의 시가총액)/(주주지분의 장부가액) ;

$GROW$ =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MKT_SHARE = 산업 · 연도별 시장점유율(9차산업 소분류 기준) ;

$CASHCYCLE$ = 현금전환주기 ;

HHI = 허핀달-허쉬만 지수(9차산업 소분류 기준) ;

F_ISSUE = 신주를 발행하였으면 1, 아니면 0 ;

$LAGTA$ = 전기 총발생액/기초총자산 ;

IND = 산업더미 ;

$YEAR$ = 연도더미

나. 연구가설 2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연구가설 2와 이에 대한 보충적 연구가설(연구가설 2-1 및 2-2)은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양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이러한 양의 관계를 완화하는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음의 조절효과가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에서 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분

8)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에 대하여 기업이 지불한 보수를 산업·연도별로 삼분위수로 구분한 결과, 가장 높은(낮은) 분위수에 속하면 보수가 높은(낮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EXSALES$ =(수출액/매출액) ;
 NOL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아니면 0 ;
 나머지 변수들은 식 (1)에서와 동일함.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가설 2 및 연구가설 2-1과 연구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하여, 앞의 Probit 회귀분석으로부터 구한 IMR을 설명변수로서 추가한 다음의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한다.

$$\begin{aligned} AEM_{it} = & \beta_0 + \beta_1 REM_{it} + \beta_2 ATS_{it} + \beta_3 REM_{it} \times ATS_{it} + \beta_4 BIGA_{it} + \beta_5 FOR_{it} \\ & + \beta_6 OWNER_{it} + \beta_7 SIZE_{it} + \beta_8 LEV_{it} + \beta_9 PTROA_{it} + \beta_{10} MTB_{it} \\ & + \beta_{11} GROW_{it} + \beta_{12} MKT_SHARE_{it-1} + \beta_{13} CASHCYCLE_{it-1} \\ & + \beta_{14} HHI_{it} + \beta_{15} F_ISSUE_{it} + \beta_{16} LAGTA_{it} + \beta_{17} IMR_{it} \\ &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end{aligned} \quad (3)$$

$REM \times ATS$ = 실제이익조정 측정치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여부의 상호작용 변수 ;
 IMR = 식 (2)에서 추정되는 Inverse Mills Ratio.
 나머지 변수들은 식 (1) 및 (2)에서와 동일함.

2. 변수측정

가. 실제이익조정 변수와 발생액 이익조정 변수의 측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발생액 이익조정 변수 (AEM)는 Kothari et al.(2005)에서의 방법론에 따른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s)으로 측정하며 이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래의 식 (4)를 산업·연도별로 회귀분석함으로써 수정 Jones 모형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을 구한다. 둘째, 전체표본을 산업·연도별로 세전총자산이익률($PTROA$)의 5분위 수를 기준으로 나눈다. 셋째, 이처럼 나누어진 표본 내에서 재량적 발생액의 중앙값(median)을 구한 후, 수정 Jones 모형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에서 이 중앙값을 차감하여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을 구한다.

$$\frac{TA_{it}}{A_{it-1}} = \alpha_0 + \gamma_0 \frac{1}{A_{it-1}} + \gamma_1 \frac{(\Delta REV_{it} - \Delta AR_{it})}{A_{it-1}} + \gamma_2 \frac{PPE_{it}}{A_{it-1}} + \epsilon_{it} \quad (4)$$

여기서,

TA = 당기순이익-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A = 기초총자산 ;

ΔREV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ΔAR = 기말 매출채권-기초 매출채권 ;

PPE = 유형자산-토지-건설 중인 자산-임목

실제이익조정 변수(*REM*)는 Roychowdhury(2006)에서의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따라서 기업의 비정상 제조원가와 비정상 재량적비용 및 비정상 영업현금흐름 각각을 구하기 위한 다음의 식 (5), (6) 및 (7)을 산업·연도별로 추정한다.

$$\frac{PROD_{it}}{A_{it-1}} = \alpha_0 + \alpha_1 \frac{1}{A_{it-1}} + \alpha_2 \frac{S_{it}}{A_{it-1}} + \alpha_3 \frac{\Delta S_{it}}{A_{it-1}} + \alpha_3 \frac{\Delta S_{it-1}}{A_{it-1}} + \epsilon_{it} \quad (5)$$

$$\frac{DISX_{it}}{A_{it-1}} = \alpha_0 + \alpha_1 \frac{1}{A_{it-1}} + \alpha_2 \frac{S_{it-1}}{A_{it-1}} + \epsilon_{it} \quad (6)$$

$$\frac{CFO_{it}}{A_{it-1}} = \alpha_0 + \alpha_1 \frac{1}{A_{it-1}} + \alpha_2 \frac{S_{it}}{A_{it-1}} + \alpha_3 \frac{\Delta S_{it}}{A_{it-1}} + \epsilon_{it} \quad (7)$$

PROD = 해당연도의 (매출원가 + 재고자산의 변동) ;

DISX = 해당연도의 재량적비용[(판매비 + 일반관리비) - (세금과공과 + 감가상각비 + 임차료비용 + 보험료)] ;

CFO = 해당연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A = 해당연도의 총자산 ;

S = 해당연도의 매출액.

위의 3가지 모형을 추정한 결과로 도출되는 각각의 잔차(ϵ)로 비정상 제조원가(*R_PROD*)와 비정상 재량적 비용(*R_DISX*) 및 비정상 영업현금흐름(*R_CFO*)을 측정한 다음에, 해석의 편의상 *R_DISX*와 *R_CFO*에 대하여 -1을 곱한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합산한 값을 실제이익조정 변수에 대한 궁극적인 측정치로 한다. 결론적으로 실제이익조정(*REM*)은 다음의 식 (8)과 같이 측정한다.

$$REM_{it} = R_PROD_{it} + R_DISX_{it} \times (-1) + R_CFO_{it} \times (-1) \quad (8)$$

나. 기타 변수의 측정

BIG4 변수(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는 감사인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Becker et al.(1998)과 Francis et al.(1999)에 의할 때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보다 피감사기업의 이익조정을 보다 많이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BIG4*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FOR*(외국인투자자 지분율)와 *OWNER*(최대주주 지분율)는 기업의 소유구조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김성혜 외(2012)와 이아영 외(2012)에 의할 때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FOR*와 *OWNER*에 대한 회귀계수는 음수와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SIZE*(기업규모), *PTROA*(세전 총자산 이익률), *LEV*(부채비율), *GROW*(매출액 성장률)와 *MTB*(주가-장부가치 비율)를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Becker et al.(1998)에 따라 생략된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SIZE* 변수를 도입하였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때문에 수익성을 높게 보이려는 유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SIZE*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LEV*는 재무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LEV*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PTROA*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그리고 *MTB*와 *GROW*는 미래성장성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MKT_SHARE(전기말 시장점유율)는 산업내 시장지배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며, 이는 한국 산업표준분류상 소분류 기준 산업 내에서의 매출액 점유율로 측정한다. 박재환과 김승준(2013)에 의하면 시장지배력이 높은 기업은 이익을 낮추려는 유인이 있으며, 이에 따라 *MKT_SHARE*의 회귀계수는 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CASHCYCLE*(전기말 현금전환주기)는 현금전환주기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⁹⁾ Zang(2012)에 의하면 현금전환주기가 길수록 수익성이 낮고 발생액이 반전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익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으며, 따라서 *CASHCYCLE*의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산업의 경쟁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며, 이는 기업의 산업내 시장점유율의 제곱을 구한 후에 이를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기준 산업별로 집계함으로써 측정한다.¹⁰⁾ 신일항 외(2014)의 연구결과를 따를 때 *HHI*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F_ISSUE*(차기 신주발행여부)는 자본조달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며, 자본조달을 예상하는 기업은 이익을 높이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F_ISSUE*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LAGTA*(전기 총발생액)는 발생액의 반전현상이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전기 총발생액이 클수록 발생액의 반전현상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고자 채량적 발생액을 크게 할 것이며 따라서 *LAGTA*의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9) *CASHCYCLE*(전기말 현금전환주기)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인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ASHCYCLE_t = (\text{매출채권 회수기간}) + (\text{재고자산 보유기간}) - (\text{매입채무 회전기간})$$

$$= \left[\frac{365}{\left\{ \frac{SALES_t}{(AR_{t-1} + AR_t)/2} \right\}} \right] + \left[\frac{365}{\left\{ \frac{COGS_t}{(INV_{t-1} + INV_t)/2} \right\}} \right] - \left[\frac{365}{\left\{ \frac{COGS_t}{(AP_{t-1} + AP_t)/2} \right\}} \right]$$

여기서,

SALES=매출액 ; *COGS*=매출원가 ; *AR*=매출채권 ;

INV=재고자산 ; *AP*=매입채무.

10) *HHI*는 신일항 외(2014)에서처럼 산업내 시장점유율의 제곱 값으로 측정하며, 이를 구체적인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HHI_{jt} = \sum_{i=1}^n MKT_SHARE_{i,jt}^2 \quad (MKT_SHARE_{i,jt} \text{는 산업 } j \text{에 속한 기업 } i \text{의 } t \text{기 시장점유율을 의미함}).$$

3. 연구대상기간 및 표본기업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내역 등에 관한 자료는 2004년부터 공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대상기간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로 한다. 그리고 표본기업은 다음의 조건들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 ① 국내에 상장된 12월말 결산인 비금융 기업일 것
- ②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 및 감사서비스 보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여부와 보수, 이사회 구성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일 것
- ③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FnGuide DataGuide Pro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업일 것
- ④ 당기순손실이 아닌 기업일 것¹¹⁾
- ⑤ 산업·연도별로 포함된 기업 수가 10개 이상인 기업일 것

실증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상장기업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로부터 비감사서비스 및 감사서비스 보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여부와 보수, 이사회 구성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였다. 둘째, 비금융업인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매출액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기준 산업 자료를 FnGuide DataGuide Pro로부터 추출하였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구한 후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자료는 제거하였다. 셋째, 2003년부터 2016년까지의 비금융업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FnGuide DataGuide로부터 추출하였다.¹²⁾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각 과정별로 수집한 자료를 병합(merge) 하였다.

이처럼 병합된 자료에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기업·연 자료와 당기순손실인 기업·연 자료 및 산업·연도별로 포함된 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기업·연 자료를 차례로 제거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기업·연 자료는 궁극적으로 총 7,102개이며, <표 1>은 이와 같은 표본기업의 선정과정 및 연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1) 앞서 제시한 식 (2)의 프로빗 회귀분석모형에는 ETR(유효세율)이 설명변수로서 포함되어 있는데, 당기순손실인 경우에는 ETR 측정치가 무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당기순손실인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12) 분석에 필요한 일부 변수 측정치를 구하려면 각 연구대상연도의 전년도 및 차년도 자료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제로 자료를 수집하는 기간은 2003년~2016년이다.

〈표 1〉 표본기업의 선정과정 및 연도별 분포

<Panel A> 표본기업의 선정과정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비금융업 외부감사 대상기업											307,397		
(－) 비상장기업											(278,420)		
(－)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없는 기업											(21,628)		
(－) 당기순손실인 기업											(78)		
(－) 산업·연도별로 포함된 기업 수가 10개 미만인 기업											(169)		
최종 표본 기업·연 수											7,102		
<Panel B> 표본기업의 연도별 분포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표본기업의 수	510	551	570	583	499	497	613	671	661	622	642	683	7,102
ATS를 구매한 기업의 수	85	98	109	90	96	78	94	120	117	153	172	176	1,388
ATS를 구매한 기업의 비율(%)	16.67	17.79	19.12	15.44	19.24	15.69	15.33	17.88	17.70	24.60	26.79	25.77	19.54

IV. 실증분석결과

1. 변수의 기술통계

극단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모든 연속형 변수들은 상하위 1% 수준에서 Winsorize 하였으며, <표 2>는 이처럼 Winsorize 절차를 거친 후의 변수의 기술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을 나타내는 변수인 *AEM*과 *REM*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과 근사하며 제1사분위수보다는 크고 제3사분위수보다는 작다. *ATS*와 *BIG4*의 평균은 각각 0.195 및 0.613이며, 이는 표본기업의 19.5%가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고 표본기업 감사인의 61.3%가 *BIG4*임을 의미한다.

외국인투자자 지분율(*FOR*)의 평균은 0.084이고 중위수는 0.024로서 차이가 큰데, 이는 KOSPI 200과 같은 특정 기업군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성장율(*GROW*)은 평균이 0.107이며, 이는 표본기업의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전기말 시장점유율(*MKT_SHARE*)은 평균이 중위수와 제3사분위수 보다 크며, 이는 독과점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일부 산업에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HHI*의 평균과 중위수는 각각 0.090과 0.049이며, 이는 표본기업이 속한 산업의 집중도가 낮음을 나타낸다.¹³⁾

13) 참고로 신일항 외(2014) 및 본 연구에서처럼 *HHI* 지수를 산업내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으로 정의할 경우, 0.01~0.1, 0.1~0.18, 0.18~0.4 및 0.4 이상은 각각 경쟁시장, 경쟁적 시장, 과점적 시장, 독점적 시장을 의미한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중위수	1사분위	3사분위	최소	최대	표준편차
<i>AEM</i>	0.001	0.000	-0.036	0.035	-0.334	0.382	0.079
<i>REM</i>	0.000	0.012	-0.093	0.115	-1.496	0.960	0.219
<i>ATS</i>	0.195	0.000	0.000	0.000	0.000	1.000	0.397
<i>BIG4</i>	0.613	1.000	0.000	1.000	0.000	1.000	0.487
<i>FOR</i>	0.084	0.024	0.003	0.113	0.000	0.577	0.126
<i>OWNER</i>	0.439	0.434	0.327	0.545	0.111	0.762	0.150
<i>SIZE</i>	19.013	18.747	18.065	19.693	16.776	23.417	1.356
<i>LEV</i>	0.365	0.358	0.221	0.496	0.062	0.754	0.174
<i>PTROA</i>	0.096	0.077	0.042	0.130	0.005	0.382	0.075
<i>MTB</i>	1.286	0.959	0.625	1.552	0.241	6.141	1.045
<i>GROW</i>	0.107	0.075	-0.015	0.192	-0.364	1.065	0.223
<i>MKT_SHARE</i>	0.033	0.006	0.002	0.024	0.000	0.460	0.074
<i>CASHCYCLE</i>	90.348	76.308	40.046	122.727	-45.926	380.514	77.009
<i>HHI</i>	0.090	0.049	0.028	0.111	0.008	0.590	0.108
<i>F_ISSUE</i>	0.235	0.000	0.000	0.000	0.000	1.000	0.424
<i>LAGTA</i>	0.017	0.007	-0.035	0.058	-0.213	0.342	0.090

AEM=Kothart et al.(2005)의 성과대응 방법에 의해 측정된 발생액 이익조정 측정치 ; *REM*= Roychowdhury (2006)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실제이익조정 측정치 ; *ATS*=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면 1, 구매하지 않았으면 0 ; *BIG4*=감사인이 Big4이면 1, 아니면 0 ; *FOR*=외국인투자자 지분율 ; *OWNER*=최대주주 지분율 ; *SIZE*=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 *LEV*=(부채총액/자산총액) ; *GROW*=(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PTROA*=(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기초 총자산) ; *MTB*=(주식의 시가총액)/(주주지분의 장부가액) ; *MKT_SHARE*=산업·연도별 시장점유율(9차산업 소분류 기준) ; *CASHCYCLE*=현금전환주기 ; *HHI*=허핀달-허쉬만 지수(9차산업 소분류 기준) ; *F_ISSUE*=신주를 발행하였으면 1, 아니면 0 ; *LAGTA*=전기 (총 발생액/기초총자산).

2. 변수의 상관계수

변수들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는 <표 3>과 같다. *AEM*(발생액 이익조정)과 *REM*(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상관계수는 0.3625로서 양수이고, 이의 *p*-값은 0.0001 미만으로서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이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크다는 연구가설 1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ATS*(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여부)와 *REM* 사이에는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지식전이효과를 지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AEM	1															
(2) REM	0.3625	1														
(3) ATS	0.0022	-0.0336	1													
(4) BIG4	0.0299	-0.0453	0.0781	1												
(5) FOR	0.0266	-0.0913	0.0809	0.2424	1											
(6) OWNER	0.0258	0.0559	-0.0050	0.0152	-0.1552	1										
(7) SIZE	0.1129	-0.0109	0.1004	0.3257	0.4886	-0.0540	1									
(8) LEV	0.0259	-0.0206	-0.0246	0.0898	-0.0270	-0.0765	0.3015	1								
(9) PTROA	0.0553	-0.0195	0.0219	0.0256	0.1661	-0.0135	-0.1239	-0.2963	1							
(10) MTB	-0.0149	-0.1757	0.0323	0.0404	0.2225	-0.1466	0.0647	0.0057	0.3723	1						
(11) GROW	-0.0274	-0.0320	-0.0208	0.0198	-0.0181	-0.0545	-0.0464	0.1162	0.3416	0.1839	1					
(12) MKT_SHARE	0.0022	-0.0584	0.0506	0.1892	0.3388	-0.0333	0.5450	0.1224	0.0012	0.1625	-0.0349	1				
(13) CASHCYCLE	-0.0147	-0.0709	-0.0343	-0.1022	-0.0878	-0.0451	-0.1905	-0.2132	-0.0292	-0.0202	0.0210	-0.1454	1			
(14) HHI	0.0009	-0.0110	0.0034	0.0379	0.1142	-0.0714	0.1476	-0.0101	0.0761	0.0496	0.0001	0.3411	-0.1205	1		
(15) F_ISSUE	0.0105	-0.0516	0.0061	-0.0471	-0.0776	-0.1355	-0.0994	0.0576	0.0740	0.1529	0.1176	-0.0641	0.0257	-0.0185	1	
(16) LACTA	0.0842	0.0472	-0.0120	-0.0062	0.0089	0.0390	-0.0558	-0.0804	0.1397	0.0333	0.0426	-0.0700	0.0950	-0.0413	0.0320	1

(주1)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2> 참조.

(주2) 굵게 표시된 수치는 10%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3>에서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설명변수들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변수 사이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로 인하여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설명변수별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모든 설명변수들에 대한 VIF가 3.05 이하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구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① 전체 표본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와 ② KOSPI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및 ③ KOSDAQ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식(1)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Column 1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REM*에 대한 회귀계수가 0.1317로서 양수이고 이는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그리고 Column 2의 경우와 Column 3의 경우에서도 *REM*에 대한 회귀계수가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를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크다.”는 연구가설 1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인 기업들에 있어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횡단면적으로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러한 실증결과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도 클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는 것은 적절하고 충분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표 4>에 통제변수로 도입한 *BIG4*, *FOR*, *OWNER* 및 *SIZE* 중에서 *BIG4*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예상과 달리 양수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며, 나머지 변수들에 대한 회귀계수는 모두 예상한 부호를 보이고 있다. *MKT_SHARE* 변수는 전체 표본기업과 KOSPI 상장기업 표본에서는 예상과 같이 회귀계수가 음수이지만 KOSDAQ 상장기업 표본에서는 예상과 달리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낸다. 이는 KOSDAQ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신생산업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산업에서는 산업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에 비해 발생액 이익조정의 유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CASHCYCLE*, *HHI*, *F_ISSUE* 및 *LAGTA*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모두 예상한 대로 양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연구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AEM_{it} = \beta_0 + \beta_1 REM_{it} + \beta_2 BIGA_{it} + \beta_3 FOR_{it} + \beta_4 OWNER_{it} + \beta_5 SIZE_{it} + \beta_6 LEV_{it} + \beta_7 PTROA_{it} \\ + \beta_8 MTB_{it} + \beta_9 GROW_{it} + \beta_{10} MKT_SHARE_{it-1} + \beta_{11} CASHCYCLE_{it-1} + \beta_{12} HHI_{it} \\ + \beta_{13} F_ISSUE_{it} + \beta_{14} LAGTA_{it} + \sum IND + \sum YEAR + \epsilon_{it}$$

변수	전체 기업		KOSPI 상장기업		KOSDAQ 상장기업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Intercept</i>	-0.2323***	(-12.11)	-0.1189***	(-4.74)	-0.4756***	(-11.76)
<i>REM</i>	0.1317***	(22.58)	0.1005***	(14.01)	0.1673***	(18.95)
<i>BIG4</i>	0.0013	(0.65)	0.0021	(0.76)	0.0016	(0.57)
<i>FOR</i>	-0.0001	(-0.99)	-0.0002**	(-2.22)	-0.0001	(-0.62)
<i>OWNER</i>	0.0001**	(1.94)	0.0000	(0.32)	0.0002**	(1.69)
<i>SIZE</i>	0.0104***	(10.73)	0.0048***	(3.90)	0.0229***	(10.55)
<i>LEV</i>	0.0198***	(3.21)	0.0115*	(1.44)	0.0128*	(1.38)
<i>PTROA</i>	0.1078***	(5.63)	0.1318***	(4.50)	0.0995***	(4.05)
<i>MTB</i>	0.0015	(1.22)	0.0010	(0.60)	0.0025*	(1.35)
<i>GROW</i>	-0.0209***	(-3.79)	-0.0319***	(-3.28)	-0.0143**	(-2.20)
<i>MKT_SHARE</i>	-0.0650***	(-4.57)	-0.0565***	(-3.39)	0.0686**	(1.75)
<i>CASHCYCLE</i>	0.0001***	(4.00)	0.0001***	(3.03)	0.0000***	(2.48)
<i>HHI</i>	0.0002	(0.02)	0.0305**	(1.74)	-0.0009	(-0.07)
<i>F_ISSUE</i>	0.0062***	(2.78)	0.0039	(1.26)	0.0084***	(2.72)
<i>LAGTA</i>	0.0510***	(3.82)	0.0642***	(3.25)	0.0449***	(2.64)
<i>IND & YEAR</i>	포함		포함		포함	
표본 수	7,102		3,400		3,702	
Adj. R ²	0.1621		0.1359		0.2068	

(주1)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2> 참조.

(주2) *, **, ***는 유의수준이 10%, 5%, 1% 미만임을 의미함.

(주3) t-값은 2-way clustering에 따라 표준오차를 조정 한 후의 값임.

4. 연구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① 전체 표본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와 ② KOSPI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및 ③ KOSDAQ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식(3)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Column 1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관심변수인 *REM*ATS*(실제이익조정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상호작용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0.0209로서 음수이고 이는 10%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표 5〉 연구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begin{aligned}
AEM_{it} = & \beta_0 + \beta_1 REM_{it} + \beta_2 ATS_{it} + \beta_3 REM_{it} \times ATS_{it} + \beta_4 BIG4_{it} + \beta_5 FOR_{it} + \beta_6 OWNER_{it} \\
& + \beta_7 SIZE_{it} + \beta_8 LEV_{it} + \beta_9 PTROA_{it} + \beta_{10} MTB_{it} + \beta_{11} GROW_{it} + \beta_{12} MKT_SHARE_{it-1} \\
& + \beta_{13} CASHCYCLE_{it-1} + \beta_{14} HHI_{it} + \beta_{15} F_ISSUE_{it} + \beta_{16} LAGTA_{it} + \beta_{17} IMR_{it} + \sum IND \\
& + \sum YEAR + \epsilon_{it}
\end{aligned}$$

변수	전체 기업		KOSPI 상장기업		KOSDAQ 상장기업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Intercept</i>	-0.2385***	(-7.94)	-0.0861**	(-2.17)	-0.4807***	(-9.24)
<i>REM</i>	0.1362***	(20.24)	0.1082***	(12.60)	0.1685***	(16.87)
<i>ATS</i>	-0.0003	(-0.14)	0.0041*	(1.57)	-0.0042	(-1.16)
<i>REM*ATS</i>	-0.0209*	(-1.64)	-0.0278**	(-1.90)	-0.0077	(-0.38)
<i>BIG4</i>	0.0018	(0.72)	0.0003	(0.08)	0.0022	(0.60)
<i>FOR</i>	-0.0001	(-1.04)	-0.0002***	(-2.45)	-0.0001	(-0.67)
<i>OWNER</i>	0.0001**	(1.97)	0.0000	(0.34)	0.0002**	(1.68)
<i>SIZE</i>	0.0106***	(9.29)	0.0038***	(2.57)	0.0230***	(9.97)
<i>LEV</i>	0.0188***	(2.74)	0.0154**	(1.77)	0.0115	(1.09)
<i>PTROA</i>	0.1087***	(5.61)	0.1247***	(4.22)	0.1010***	(4.05)
<i>MTB</i>	0.0015	(1.22)	0.0011	(0.67)	0.0025*	(1.38)
<i>GROW</i>	-0.0209***	(-3.79)	-0.0313***	(-3.24)	-0.0144**	(-2.22)
<i>MKT_SHARE</i>	-0.0635***	(-4.44)	-0.0561***	(-3.32)	0.0705**	(1.79)
<i>CASHCYCLE</i>	0.0001***	(4.09)	0.0001***	(3.16)	0.0000***	(2.57)
<i>HHI</i>	0.0001	(0.01)	0.0331**	(1.89)	-0.0008	(-0.06)
<i>F_ISSUE</i>	0.0062***	(2.76)	0.0038	(1.22)	0.0085***	(2.75)
<i>LAGTA</i>	0.0507***	(3.80)	0.0640***	(3.26)	0.0447***	(2.62)
<i>IMR</i>	0.0025	(0.27)	-0.0117	(-1.02)	0.0029	(0.20)
<i>IND & YEAR</i>	포함		포함		포함	
표본 수	ATS 구매 기업	1,388	760	628		
	ATS 비구매 기업	5,714	2,640	3,074		
	합계	7,102	3,400	3,702		
Adj. R ²		0.1624	0.1376	0.2065		

(주1) *IMR*=식 (2)에 의하여 추정 한 Inverse Mills Ratio.

IMR 이외의 나머지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2> 참조.

(주2) *, **, ***는 유의수준이 10%, 5%, 1% 미만임을 의미함.

(주3) t-값은 2-way clustering에 따라 표준오차를 조정 한 후의 값임.

그리고 Column 2의 경우와 Column 3의 경우에서도 $REM*ATS$ 에 대한 회귀계수가 음수이며 Column 2의 경우에는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한편, IMR 이외의 통제변수들에 대한 회귀계수의 부호 및 유의성은 전반적으로 <표 4>에서의 결과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양의 관계에 대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음의 조절효과를 지닌다.”라는 연구가설 2와 부합되는 결과이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① 연구가설 1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동기가 크다. ② 감사인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업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제이익조정 참여 여부와 그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보다 양호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다. ③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러한 양호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발생액 이익조정을 하였는지 확인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결과 기업이 발생액 이익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다 많이 억제하게 된다.

한편 <표 5>에서 REM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REM*ATS$ 변수가 추가되더라도 REM 변수 자체의 유의성이 유지된다는 것으로서,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크다.”는 연구가설 1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ATS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KOSPI 상장기업의 경우는 10%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수인 반면, KOSDAQ 상장기업과 전체 기업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부터 ATS 의 조절효과 이외에 ATS 자체가 AEM 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과 일관성은 그다지 없음을 알 수 있다.

5. 보충적 연구가설(연구가설 2-1 및 2-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연구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하여 ‘높은 보수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으로 구성된 표본기업을 별도로 구성한 후에 식 (3)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하여 ‘낮은 보수의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으로 구성된 표본기업을 별도로 구성한 후에 식 (3)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회귀분석은 앞서 연구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① 별도로 구성된 전체 표본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경우와 ② KOSPI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및 ③ KOSDAQ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한 경우 각각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Panel A에서 Column 1의 경우를 살펴보면 $REM*ATS$ 에 대한 회귀계수가 -0.0453 로서 음수이며 이는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그리고 Column 2의 경우와 Column 3이 경우에서도 $REM*ATS$ 에 대한 회귀계수가 음수이며, Column 2의 경우에는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이다.

〈표 6〉 보충적 연구가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begin{aligned}
AEM_{it} = & \beta_0 + \beta_1 REM_{it} + \beta_2 ATS_{it} + \beta_3 REM_{it} \times ATS_{it} + \beta_4 BIGA_{it} + \beta_5 FOR_{it} + \beta_6 OWNER_{it} \\
& + \beta_7 SIZE_{it} + \beta_8 LEV_{it} + \beta_9 PTROA_{it} + \beta_{10} MTB_{it} + \beta_{11} GROW_{it} + \beta_{12} MKT_SHARE_{it-1} \\
& + \beta_{13} CASHCYCLE_{it-1} + \beta_{14} HHI_{it} + \beta_{15} F_ISSUE_{it} + \beta_{16} LAGTA_{it} + \beta_{17} IMR_{it} + \sum IND \\
& + \sum YEAR + \epsilon_{it}
\end{aligned}$$

<Panel A : 연구가설 2-1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전체 기업		KOSPI 상장기업		KOSDAQ 상장기업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Intercept</i>	-0.2427***	(-7.37)	-0.0725*	(-1.63)	-0.4926***	(-8.83)
<i>REM</i>	0.1365***	(20.23)	0.1089***	(12.70)	0.1676***	(16.80)
<i>ATS</i>	0.0055*	(1.49)	0.0064**	(1.69)	0.0034	(0.42)
<i>REM*ATS</i>	-0.0453***	(-2.75)	-0.0324**	(-1.86)	-0.0376	(-1.15)
통제변수	포함		포함		포함	
표본 수	높은 보수의 ATS 구매 기업	467	317		150	
	ATS 비구매 기업	5,714	2,640		3,074	
	합계	6,181	2,957		3,224	
Adj. R ²	0.1644		0.1427		0.2036	

<Panel B : 연구가설 2-2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전체 기업		KOSPI 상장기업		KOSDAQ 상장기업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Intercept</i>	-0.2016**	(-7.46)	-0.0857***	(-2.32)	-0.4241***	(-8.77)
<i>REM</i>	0.1379***	(20.42)	0.1094***	(12.68)	0.1707***	(17.12)
<i>ATS</i>	-0.0079**	(-1.99)	0.0025	(0.44)	-0.0122***	(-2.33)
<i>REM*ATS</i>	0.0095	(0.40)	0.0152	(0.37)	-0.0134	(-0.44)
통제변수	포함		포함		포함	
표본 수	낮은 보수의 ATS 구매 기업	411	156		255	
	ATS 비구매 기업	5,714	2,640		3,074	
	합계	6,125	2,796		3,329	
Adj. R ²	0.1664		0.1415		0.2067	

(주1) 변수에 대한 정의는 <표 5> 참조.

(주2) *, **, ***는 유의수준이 10%, 5%, 1% 미만임을 의미함.

(주3) t-값은 2-way clustering에 따라 표준오차를 조정 한 후의 값임.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 당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를 지닌다.”라는 연구가설 2-1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①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중대한 경영이슈와 관련한 것임에 따라 당해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 감사인은 당해 세무서비스로부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을 얻는다. ② 이러한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한 음의 조절효과를 지닌다.

<표 6>의 Panel B에서 Column 1의 경우를 살펴보면 $REM*ATS$ 에 대한 회귀계수가 유의적이지 않으며, 이는 Column 2의 경우와 Column 3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낮은 경우 당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지 않는다.”라는 연구가설 2-2와 부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① 감사인이 제공하는 세무서비스가 단순한 납세순응 서비스와 관련한 것임에 따라 당해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낮은 경우 감사인은 당해 세무서비스로부터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을 그다지 얻지 못한다. ② 이처럼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을 그다지 얻지 못함에 따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한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지 않는다.

V. 결 론

기업의 경영자는 발생액 이익조정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 비정상적인 경영활동에 기반한 실제 이익조정도 시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손쉬운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업들에 있어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음의 관계가 존재함을 지지하는 실증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필요로 하는 총체적인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와 실제이익조정의 규모 모두가 더 크게 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기업들에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이 언급된 바 있다.

만약에 이처럼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양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보는 것은 적절하고 충분한 감사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 역시 크게 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인의 입장에서 기업이 실제

이익조정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는 것은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하여는 기업의 현황과 미래의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에 관하여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감사인으로 하여금 기업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이 실제이익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만약 그렇다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클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게 될 것이다. 한편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기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반면, 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그다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리고 그 결과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양의 관계에 대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지니는 음의 조절효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에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의 언급내용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들에서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에 전반적으로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큰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의 관계에 대하여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가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며, 이러한 음의 조절효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에서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이익조정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발생액 이익조정의 규모가 크며,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이러한 양의 관계를 완화하는 음의 조절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음의 조절효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높은 경우에는 존재하는 반면,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보수가 낮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는 지식전이효과를 지냄에 따라 기업이 실제이익조정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감사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 효과를 지님을 시사한다. 아울러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가 적은 편인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확대함으로써 이 분야의 연구에 공헌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성혜 · 이아영 · 전성빈. 2012. “외국인투자자의 특성과 실제이익조정－외국인대주주의 역할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7권 제2호 : 129－165.
- 김은희 · 김임현. 2017. “감사인 의 산업전문성과 조세회피”. 회계저널 제26권 제4호 : 39－76.
- 김희규 · 신승묘. 2017. “세액공제 기회의 실현과 감사인제공 세무서비스”. 회계저널 제26권 제4호 : 1－38.
- 박미영. 2012.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191－219.
- 박영규. 2012.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 대체적인가, 보완적인가?”. 기업경영연구 제19권 제6호 : 43－58.
- 박재환 · 김승준. 2013. “시장지배력과 이익조정 수단”. 회계저널 제22권 제5호 : 195－224.
- 신일항 · 이명건 · 이은철. 2014. “산업 내 경쟁정도와 실제이익조정－기업지배구조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9권 제3호 : 57－90.
- 이아영 · 전성빈 · 김성혜. 2012. “지배주주의 지분구조와 실제이익조정－소유권과 소유지배권리도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7권 제1호 : 157－189.
- 이영한 · 윤성만. 2011. “조세유인과 비조세유인이 기업의 외부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6권 제2호 : 185－219.
- 이영한 · 허 원 · 윤성만 · 최원석. 2010.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4호 : 197－222.
- 이창섭 · 최우석 · 배성호. 2012. “실제이익조정활동과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경영학연구 제41권 제4호 : 757－787.
- 전홍민 · 한혜상 · 유용근. 2013. “경영자 지분율이 실물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42권 제5호 : 1219－1238.
- Badertscher, B. A. 2011. Overvaluation and Choice of Alternative Earnings Management Mechanisms. *The Accounting Review* 86 (5) : 1491－1518.
- Becker, C., DeFond, M., Jia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 1－24.
- Christensen, B. E., A. J. Olson, and T. C. Omer. 2015. The Role of Audit Firm Expertise and Knowledge Spillover in Mitigating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he Tax Account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7 (1) : 3－36.
- Cohen, D., A. Dey, and T. Lys. 2008. Real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in the Pre－ and Post－Sarbanes－Oxley Period. *The Accounting Review* 83 (3) : 757－787.
- Cohen, D., and P. Zarowin. 2010.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ctivities Around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50 (1) : 2－19.
- De Simone, L., M. S. Ege, and B. Stomberg. 2015. Internal Control Quality : The Role of

-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The Accounting Review* 90 (4) : 1469—1496.
- Fields, T. d., T. Z. Lys, and L. Vicent. 2001. Empirical Research on Accounting Choice.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31 : 255—307.
- Francis, J., E. Maydew, and H. Sparks. 1999. “The Role of Big 6 Auditors in the Credible Reporting of Accrual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8 : 17—34.
- Gleason, C., and L. Mills. 2011. Do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Improve the Estimate of Tax Reserv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 (5) : 1484—1509.
- Graham, J. R., C. R. Harvey, and S. Rajgopal. 2005.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0 : 3—73.
- Heckman, J. 1979. The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1) : 153—162.
- Kinney, W. R., Z. V. Palmrose, and S. Scholz. 2004. Auditor independence, non—audit services, and restatements : Was the U.S. government righ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2 (3) : 561—588.
- Krishnan, G., and G. Visvanathan. 2011. Is There an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3 (2) : 111—135.
- Krishnan, G., G. Visvanathan, and W. Yu. 2013. Do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Enhance or Impair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5 (1) : 1—19.
- Lassila, D., T. Omer, M. Shelley, and M. Smit. 2010. Do Complexity, Governance, and Auditor Independence Influence Whether Firms Retain Their Auditors for Tax Servic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2 (1) : 1—23.
- McGuire, S. T., T. C. Omer, and D. Wang. 2012. Tax Avoidance : Does Tax—Specific Industry Expertise Make a Difference? *The Accounting Review* 87 (3) : 975—1003.
- Roychowdhury, S. 2006.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2 : 335—370.
- Zang, A. 2012. Evidence on the Tradeoff between Real Activities Manipulation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ipulation. *The Accounting Review* 87 : 675—703.

The Relation between Accrual – based Earnings Management & Real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or – provided Tax Services

Heuikyu Kim* · Seung–Myo Shin**

〈Abstract〉

Although it is possible to expect that a negative relationship exists between accrual – based earnings management(hereinafter, AEM) and real earnings management(hereinafter, REM), an empirical study supporting this expectation is still difficult to find. This may be because the firm in need of larger earnings management has both larger AEM and larger REM, and so there exis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EM and REM. If it is so, this suggests that measuring the magnitude of the REM would be helpful in performing appropriate and sufficient auditing. In addition, many prior studies on auditor – provided tax services(hereinafter, ATS) suggest that ATS may help to assess whether and to what extent a firm has made REM.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points,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study for the Korean listed companies on whether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EM and REM, and ATS mitigates this positive relationship to have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Test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EM and REM, and ATS has a negative moderating effect. And this finding is significant in case the ATS fee is high, but not in case the ATS fee is low.

These results suggest that ATS may help in assessing whether and how large a firm has engaged in REM, to have a positive effect of improving the audit quality. In addition, this study is thought to make an academic contribution by expanding the existing research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EM and REM in terms of the effects of ATS.

〈Key words〉 Auditor – Provided Tax Services, Accrual – based Earnings Management, Real Earnings Management, Knowledge Spillover Effect, Fee of Tax Services

* Ph.D. of Inha University(Business Administration), gom1148@gmail.com, First Author

** Professor of Inha University(Business Department), smshin@inha.ac.kr, Corresponding Author